

#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산업계의 보다 적극적 사전 대응 필요

환경부가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 REACH)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판 REACH라 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5일 입법 예고안을 공고하였고, 2개월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도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1996년 12월 23일 고시된 물질 또는 1991년 2월 2일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평가가 완료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그 이외의 모든 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매년 제조 또는 수입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 중 평가 대상물질을 선정하여(약 3,000여종 정도 선정 계획) 이를 고시하고, 연간 0.5톤 이상 평가 대상물질을 수입, 제조하는 업체는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 등으로 지정되며, 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 내 제한·금지 물질의 함량, 용도 등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알려진 입법 추진 과정은 금년 중에 법안 국회 통과 후 2년간의 유예(일부는 1년간 유예)를 거쳐 2014년부터 등록 및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등록은 물질의 종류 및 생산 톤수 등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유예되지만, 일단 2014년 법이 시행되면 6개월 이내에 예비등록은 완료하여야 등록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김 범 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

환경부는 화평법 제정의 이유를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화학산업을 보호하고 안전성 자료 없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제시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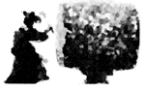
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에서 2006년에 수립한 화학물질 관리전략(SAICM) 대응을 위한 필요성을 법안 제정의 당위성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이를 대하는 산업계의 우려는 매우 크다.

먼저, 가장 큰 우려는 입법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화평법은 등록 기준 연간 최소 제조 또는 수입 톤수, 매년 수입 및 제조량 보고 의무 등 해외의 화학물질 등록 관련 법령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규제라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화평법상 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톤수는 연간 0.5톤 이상 수입 또는 제조되는 물질이나, EU를 비롯한 외국은 모두 1톤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 제조 량에 대한 매년 보고 의무도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없는 규제이다. 현재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조차도 그 규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매년 벌금 등 처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새로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령이 과연 우리 산업계 현실에 제대로 맞는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선진국형 법률이라 할지라도 이를 따라야 할 대상자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법의 실효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평법 시행으로 인해 간접비용 포함 최저 2조~13조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대부분의 비용은 원료 물질 생산 중소기업에게 부과된다. 매출 및 수익 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화평법 시행 시 만약 제품 가

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수익의 78%가 화평법 대응 비용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대기업은 수익 감소 효과가 고작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상당수 한계 중소기업의 몰락과 급격한 산업계 구조조정 및 경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특징은 중국이나 우리 영세 중소기업이 원료 화학물질 및 유독성 원료 물질을 생산하면, 이를 바탕으로 가공 및 혼합 등 제조 공정을 거쳐 제품화하고 있으며, 수출도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런데 화평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한 수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산업연구원의 화평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약 22% 이상의 기업이 화평법 추진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78%의 기업이 화평법 시행을 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 하나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화평법 시행에 따른 외화 유출이다. 원래의 법 제정 추진 목적은 국내 녹색 화학산업 육성 및 화학산업 보호였으나, 현재 우리나라 시험분석기술 수준은 화평법에서 요구하는 51개 유해성 평가 항목 자료(물리, 화학적 특성, 생태독성, 인체 독성)를 모두 국내에서 시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약 30여개 항목에 대한 분석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이미 물질정보를 확보한 해외 기업으로부터 물질자료를 구입하거나 해외 시험분석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국부가 오히려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13년 평가대상물질 고시 후 본등록까지 물질에 따라서는 최소 6개월, 최대 1년여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평가대상물질 예비 목록, 등록 및 평가를 위한 하위 규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안) 자체만 입법 예고되어 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의 제조 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전혀 불가능하여 경영환경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화학물질의 평가와 관리가 매우 전문적이고 여러 부처에 관련된 업무인 만큼, 환경부가 단독으로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화평법 제정의 배경인 SAICM 추진 계획은 환경부 단독 계획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관제부처 합동 계획임을 감안해도 화평법의 추진이 환경부 일개 부처에 의한 단독 추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시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진정한 산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형식적인 2개월간의 입법예고와 몇 차례의 일방적인 환경부 홍보성 설명회 등을 거쳐 입법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EU는 REACH를 만들기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안하고, 2005년 1년간 모의 시행, REACH Implementation Program 등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업

의 인식을 제고해 왔으며, 일본 또한 산업계와 환경단체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경산성에서 입법을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EU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안 시행 여건 성숙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듯 하다.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보전이라는 대의 명제를 앞에 두었을 때,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선진화와 체계적인 관리 체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제정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등록 및 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제는 환경부도 해외 선진국의 법 자체를 베껴와서 선진화를 추장하기 보다는 법 제정 과정의 선진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산업계도 입법 예고된 사안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ko]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